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배포 일시			2013. 11. 19(화) 14:00	
담당부서	총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과장 주영준, 사무관 박일철 (☎ 02-2110-4868, 5412)
	전기요금		전력진흥과	과장 김종철, 사무관 성보경 (☎ 02-2110-4660, 4662)
	물가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과장 이대희, 사무관 박지원 (☎ 044-215-2770, 2773)
	세제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안덕수, 사무관 정필규 (☎ 044-215-4250, 4253)
보 도 일 시			2013.11.19(화) 14:00 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
-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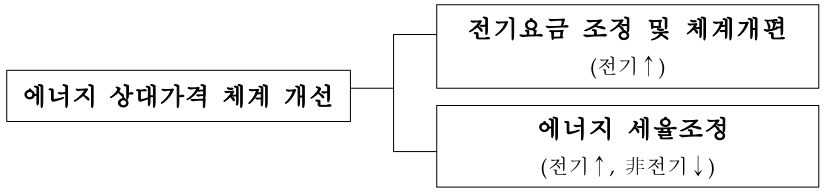
□ 정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금년 동계 중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고,

○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

□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함

<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 방향 >



Ⅰ.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전기 소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하여 급증하고 있음(☞첨부1)

* 전기사용량(전년대비 증가율): ('08) 4.5% ('09) 2.4% ('10) 10.1% ('11) 4.8% ('12) 2.5%

○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옮겨가면서** 전기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05~'12년간 가격증가율: 전기 33% (Vs) 등유 60%, 도시가스 75%
** '05~'12년간 소비증가율: 전기 40% (Vs) 등유△44%, 도시가스 7%

※ 타 에너지원(유류, 가스)의 전기 대체소비 사례

(예시1) A기업 빌딩은 중앙집중냉방 건물로 기존에 가스냉방을 활용하였으나, 최근 각 사무실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냉방 방식으로 교체

(예시2) B농가에서는 기존에 면세유를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난방과 건조시설을 전기 보일러와 전기 건조시설로 전환

(예시3) C공장에서는 유류를 사용하는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발전기 가동을 멈추고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 받음

□ 늘어나는 **전기 소비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능력도 확대하되, 입지·환경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공급시설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전력 수급 관리가 시급**함

○ 특히, 그간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투자 유인이 부족*했던 **전력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 부문**의 **기술 투자를 유인**하여, **에너지 고효율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온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보일러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사업성이 저조

※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소비가 감소세로 전환
· 전력소비량 증가율 비교('08년 대비 '12년): (韓) 19.3% (日) △ 4.6% (美) △1.9%

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가.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여 **11월 21일(목)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힘

○ 금년 중 조정요인은 8% 이상이나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하였음

* 한전은 임직원 임금 및 성과급 반납, 불요불급한 비용절감, 자산(자회사 지분, 알짜 부동산) 매각 등 '사상 가장 강력한 부채 대책'(11.11 발표) 이행을 추진할 계획

○ 또한,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 개선을 병행**한 것이 금번 조정의 주요 특징임

< 용도별 조정률 >

□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조정**함

구 분	평균	주택	일반	교육	산업	가로	농사	심야
조정률*(%)	5.4%	2.7%	5.8%	0%	6.4%	5.4%	3.0%	5.4%

- **산업용·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하여,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급증을 완화
-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으로 조정**
-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
 (특히, 초·중·고교가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갑)은 기본요금 요율 인하)
- **농사용**은 최소 주준으로 조정, **가로등·심야**는 평균 수준으로 조정

* 향후 1년간 용도별 평균 부담 증가율(예상치)로 체계 개편 내용을 포함하여 산출

< 전기요금 체계개편 및 전기사용계약기준 개선 >

□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첨부2)

○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패턴 변화를 감안하여, **계절별·시간대별 구분을 개편** (일반용·산업용·교육용)

① 하계 확대(7~8월→6~8월), ② 하계, 춘·추계 최대부하시간대 확대(5시간→6시간)

○ 농사 본연의 용도(양수·배수용)와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농사용(을) 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

○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 (일반용·산업용(을))

① **동·하계 특정일 피크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하여 의무절전을 대체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 (5천kW 미만→고압A)

② **피크시간대**(14~17시)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 대비 5배)을 **부과**하여, 피크절감 투자를 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 신설 (고압B·C 대상)

○ 24시간 설비를 가동하여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 (일반용·산업용(을) 고압A 선택Ⅲ)

○ 한편,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12월 초부터 '세부적인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추진

□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도 대폭 개선**함 (☞첨부3)

○ **전류제한기 용량확대**(220W→660W),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계약전력 20kW 이하) 및 **분할납부**(20kW 초과 등) 등을 시행하는 한편,

○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키로 하였음

< 금번 전기요금 조정효과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첨부4)

○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 원가는 0.074%P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 **도시가구**(월평균사용량 310kWh)**는 평균 1,310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일반용·산업용** 등의 경우에는 **전기사용 규모, 사용패턴** 등에 따라 부담이 상이

나. 에너지세율 조정방안

□ 기획재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무연탄(연탄)은 현행 비과세 유지

※ 유연탄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 발전 연료간 과세 형평성(LNG·원자력·중유 등 여타 발전연료는 유류세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은 비과세 중) 등을 고려하여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과세필요성을 지속 제기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30%를 적용**하여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

* 발열량 기준으로 유연탄이 LNG의 1/2임을 감안하여, LNG 세율(60원/kg)의 절반 설정

○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음

○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14.7.1 이후 시행할 계획임

□ 또한,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여,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LNG)** 60원/kg → 42원/kg, **(등유)** 104원/ℓ → 72원/ℓ, **(프로판)** 20원/kg → 14원/kg

□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약 8,300억)는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첨부5)

○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 지원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Ⅲ. 주요 기대효과

< 전력소비 감소 및 신산업 성장 효과 >

□ 정부는 금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보급·스마트그리드 등 **신시장-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부문별 영향 >

□ **일반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의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1) 전기요금은 인상되지만, **LNG 가격 하락**으로 **가구당 실제 비용부담 증가는 소폭**으로 예상

(2) 등유(주로 서민층 사용) 가격 하락, 에너지바우처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 공급지원 확대(추가세입 활용)로 **취약계층 부담**은 **대폭 완화** 기대

□ 한편, **산업계**는 **단기 부담이 증가**하지만 **선택형 요금제** 등을 활용한 합리적인 **전력수요 패턴 조정**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인 효율개선 투자** 확대와 **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 실현을 기대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박일철 사무관(☎ 02-2110-5412), 전력진흥과 성보경 사무관(☎ 02-2110-4662), 기획재정부 정필규 사무관(☎ 044-215-425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우리나라 전기 소비 증가 현황과 원인

□ **(현황)** 우리나라의 **전기소비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하여 급증하고 있음

○ **(전기소비수준) GDP 대비 전기소비량** 기준으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들의 평균소비량 대비 **70% 이상 높은 수준임**

* GDP 대비 전력소비량('11년, Wh/$) : 한국 479 vs (OECD 평균) 267

○ **(전기소비증가율)** 일반적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할수록 **총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 '06년에 25년후('30년) 총에너지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21%로 예측했으나 불과 6년이 지난 '12년에 이미 19%에 도달, **20년이나 빠른 증가세**

* 전기사용량(전년대비 증가율): ('08) 4.5% ('09) 2.4% ('10) 10.1% ('11) 4.8% ('1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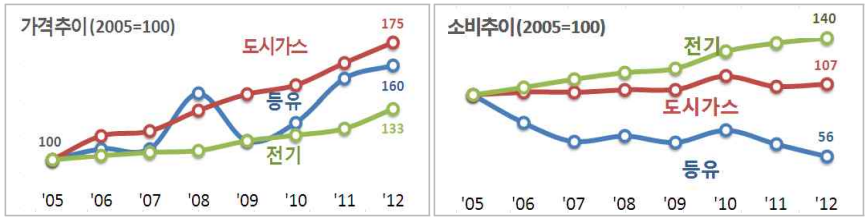
-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전기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 우리나라는 전기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

*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투자 등으로 전기소비 감소세 전환(IEA)
- 전기사용량증가율('08~'12년 누적): (한국) 19.3% (일본) △4.6% (미국) △1.9% (독일) △2.7%

□ **(원인)** '00년대 후반 新고유가 시기 이후, **다른 에너지가격**(유류·가스 등)**은 국제시세에 따라 상승**하였으나,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으로 억제**

○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화되면서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급격히 대체**되어 전력수요가 급증

< 원별 가격 및 소비추이 >



첨부2 전기요금 체계개편 상세 내용

1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체계

□ **기후변화 영향**과 **전력수요패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계절별·시간대별 구분**과 **구간별 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5~6월부터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6월에도 '여름철 요금'을 적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전체)

○ 오전 중 전기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여름철과 봄·가을철 **오전 10~11시**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추가** (일반용·산업용(고압), 교육용(계약전력 1천kW 이상))

*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이 겨울철(6시간)과 여름철, 봄·가을철(5시간)이 상이하였으나, 동일하게 6시간으로 운영

[현행]

계절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시간대 구분	(시간)	~9시	9시~10시	10시~11시	11시~12시	12시~13시	13시~14시	14시~15시	15시~16시	16시~17시	17시~18시	18시~19시	19시~20시	20시~21시	21시~22시	22시~23시	23시~24시
	(겨울철)	경부하	중간	최대		중간					최대			중간		최대	경부하
	(봄가을, 여름철)	경부하	중간		최대	중간		최대					중간				경부하

[변경]

계절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겨울철		봄철			여름철 (주가)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시간대 구분	(시간)	~9시	9시~10시	10시~11시	11시~12시	12시~13시	13시~14시	14시~15시	15시~16시	16시~17시	17시~18시	18시~19시	19시~20시	20시~21시	21시~22시	22시~23시	23시~24시
	(겨울철)	경부하	중간	최대		중간					최대			중간		최대	경부하
	(봄가을, 여름철)	경부하	중간	(주가)	최대	중간		최대					중간				경부하

□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 확대 (농사용)

○ **농사 본연의 용도**(농사용(갑), 양수·배수용)와 **영세시설농**을 **제외**한 **기업농**(농사용(을))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전력사용 유도

* (현재) 단일요금 → (개편)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요금 차등

□ 겨울철 전력수요 절감 시그널*을 높이기 위해, 여름철과 봄·가을철 전력량 단가 인상률에 비하여, **'겨울철 전력량 단가'** 인상률을 더 높게 조정

* 전기난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유류·가스난방→전기로 대체)하여 **연중 최대 전력수요가 겨울철에 발생**(2009년 이후)

< 계절별 단가 인상률(일반용·산업용(을) 기준) >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2~3%	2~3%	4~6%

□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전기소비자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야간시간대**(23~9시) **단가'**를 위주로 상향 조정 (일반용·산업용(을))

* 과거 **야간부하시간대**(23~9시)에는 **저비용 발전기**(원자력, 석탄)만 가동되었으나, 최근에는 해당 시간대에도 고비용 발전기 가동되고 있는 상황

** 야간시간대 요금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동화 설비 투자 등이 용이한 부분에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

< 시간대별 단가 인상률(일반용·산업용(을) 기준) >

경 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4~5%	약 2%, 약 4%(동계)	약 2%, 약 4%(동계)

2 전력사용특성을 반영한 선택형 요금제 도입

○ **24시간 설비를 가동하여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선택형 요금 도입** **(일반·산업용(을) 고압A 선택Ⅲ)**

* 현재보다 기본요금 비중이 높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낮은 선택형 요금

< 고압A 선택Ⅱ(현행) 선택Ⅲ(신설) 비교(여름철 요금) >



3 수요관리형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 확대 및 신규 도입

□ **'자율절전 유도형' 인센티브 요금제** (CPP; Critical Peak Pricing)

○ **중규모 사업장**(고압A 사용)의 경우, **피크일·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되, **평상시 요금은 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 **자발적인 피크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무절전을 대체

* '13년 동계(1~2월)와 하계(7~8월) 중 각각 계약전력 3천kW 미만, 5천kW 미만에 시범 적용

○ 동계(1~2월)와 하계(7~8월) 각 60여일 동안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피크일은 10일 내외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할인된 요금이 적용

< 2014년 여름철 요금 예시(산업용(을) 고압A 선택Ⅱ) >



□ **'피크절감 투자유도형' 차등요금제**

○ 투자여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고압B, C 사용)의 경우, 피크시간대에 **자가발전기 가동**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한 전력수요관리**(에너지 저장장치 등)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을 제시

○ **여름철과 봄·가을철의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여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3시간은 중간부하시간대 요금 수준으로 할인

* 겨울철에는 연속적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 2014년 여름철 요금 예시(산업용(을) 고압B 선택Ⅱ) >



첨부3 전기사용계약기준 개선 상세 내용

1 주택용 체납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 확대

○ 에너지취약계층의 겨울철 전기 난방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에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확대(220W → 660W)**하고, **전류제한기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

※ 전류제한기

주택용 전력의 경우에는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도 단전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

< 전류제한기 용량별 동시 사용가능 기기 >

·220W: 전등32W(1개), 21인치 TV 85W(1대), 150ℓ 냉장고 50W(1대), 선풍기 50W(1대)

·660W: 전등32W(1개), 21인치 TV 85W(1대), 150ℓ 냉장고 50W(1대), **전기장판 200W**(2대)

2 초과사용부가금* 형평성 강화 (저압소비자)

○ 전자식전력량계(계약전력 20kW 이상)가 설치된 저압전기(220V, 380V) 소비자에 대한 **'초과사용부가금' 부과 기준**을

-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횟수에 따라서 부과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해당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계약전력 정상화를 유도**

* (현재) 초과횟수에 관계없이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250%의 부가금을 부과
(개선) 초과횟수에 따라 차등(1회: 경고, 2~3회: 150%, 4~5회: 200%, 6회이상: 250%)

※ 초과사용부가금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변압기 고장 등에 따른 정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소비자가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여 **계약전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전기사용자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량(최대피크전력)을 사전에 계약하여, 동 용량만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3 임차인에 대한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확대

○ 임차인의 경우 **계약전력 20kW 이하의 소규모 사용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보증금 설정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자영업자 등의 전기사용편의 증대**

○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기요금 보증금

·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의 부실채권 최소화를 위해 반복 연체납 소비자, 요금미납 해지 소비자, 임시전력 소비자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임차인 사용자에 대해서 3개월분 전기요금을 보증금으로 징수

* 단, 주택용, 계약전력 5kW 이하(소규모), 신용도가 높은 경우(1~6등급)에는 면제

4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복지할인 확대

○ 영유아 보육시설을 현재 **'교육용'에서 '일반용' 전력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되,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을 적용**(20% 할인)하여 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전력으로 적용('05년~)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할인 도입('07년)으로 일반용 전환 후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저렴

※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제도 (2007년부터 적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주택용은 21.6% 할인, 일반용 전력은 20% 할인 적용

첨부4 금년도 전기요금 조정 영향

□ 전력피크 절감효과

○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으로 **약 80만kW 피크 감축** 기대

□ 거시경제영향

○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원가는 0.074%P 상승요인

□ 소비자별 부담 증감

○ **도시가구**(월평균사용량 310kWh)의 경우 **평균 1,310원 상승** 전망

○ 일반용·산업용은 **전기사용 규모, 사용패턴** 등에 따라 부담이 상이

< 일반용·산업용 부담 증감(예시) >

구 분		월사용량 (계약전력)	전기요금(원)		
			조정 전	조정 후	차액
일반용	일반음식점 (저압)	4,147kWh (20kW)	562,940	592,210	29,270
	○○ 백화점 (고압)	120,081kWh (800kW)	19,891,660	21,164,730	1,273,070
산업용	xx 제조공장 (저압)	1,907kWh (20kW)	266,290	283,330	17,040
	△△ 공장 (고압)	3.5백만kWh (14천kW)	456,118,810	485,310,410	29,191,600

* 부가가치세(10%) 및 전력산업기반기금(3.7%) 포함

첨부5 에너지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및 증가세수 활용방안

□ 에너지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유연탄 과세 및 등유·LNG·프로판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약 8,300억원** 수준

□ 증가세수 활용방안

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연 2,000억원)

○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

②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 등(연 3,000억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지원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③ 지방재정을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연 3,300억원)

* 증가세수의 39.51%(지방교부세율: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20.27%)는 지방재정으로 이전

○ 안전행정부·교육부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동 재원을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연료비, 학교 난방비 등 에너지 지원 확충에 사용토록 적극 권장